

石油事業基金制度의 現況과 長期課題

夫 太 煥

<動力資源部 · 油政課長>

I. 石油事業基金의 現況

1. 石油事業基金의 設置背景과 目的

石油事業基金制度의 法的 運用根據가 마련된 것은 1977년말이었다.

1973年 제1차 석유파동의 쓰라린 경험 이후 國際石油市場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1977년초 사우디 아라비아가 Arabian Light 원유를 12.09\$/B로 결정한데 비하여 쿠웨이트는 自國產原油価를 12.37\$/B로 높게 책정함에 따라 國際石油市場은 價格二元化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7년말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이와같은 原油価二元化 상황에 의해 사우디原油를 사용하는 精油會社와 쿠웨이트 原油를 사용하는 精油會社間에 상당한 損益差異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앞으로 油價안정과 精油社間 균형된 육성을 위하여는 이러한 原油価差異에 의해 찬 값으로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會社에 暴利가 발생할 경우 그 利益의一部를 基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石油事業法에 石油事業基金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石油수급안정을 위하여는 石油備蓄이 절실히 따라 同事業에 대한 基金사용이 가능도록 하였다.

石油事業基金의 설치목적은 두말할 나위없이 石油政策의 기본목표인 「石油의 安定 · 低価 公급」에 있으며, 이러한 精神은 石油事業法上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참고〉石油事業法上의 基金설치 목적—

第17條의 2(基金의 設置)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과 石油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2. 石油事業基金制度의 機能과 性格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石油事業基金制度의 機能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사업 기금의 기능—

- 가. 수급안정기반 구축
 - 석유비축의 확대
 - 原油導入先다변화의 지원
 - 유전개발의 지원
- 나. 가격안정기반구축
 - 원유의 현격한 차등가격 발생시 국내원유가의 안정적 유지

□ 特輯 I / 関稅 · 基金制度의 再点檢 □

| |
|--------------------------------|
| ○ 국내油価급변동 요인 발생시 장기 완충역할 수행 |
| ○ 국내생산과 수입제품간의 가격형평유지 |
| — 징수액의 탄력적운영 |
| — 수입제품의 손실보전(수급상 불가피한 高価 수입시) |
| — 수출제품의 기금환급을 통한 국제경쟁력유지 |
| 다.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의 수행 |
| ○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합리화의 지원 |
| ○ 석탄산업, 전원개발사업등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 ○ 석유품질관리사업의 추진 |

이러한 石油事業基金의 기능, 특히 가격안정기능은 石油事業基金의 성격이 一般租稅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一般租稅는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不特定用途에 사용되지만, 石油事業基金은 석유관련자를 징수대상과 수혜대상으로 하여 法上 特定用途에만 국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더우기, 원유의 현격한 차등가격 발생시에는 精油社間 균형된 육성을 위하여 低価 導人精油社로부터 平均導人価格과의 차액 중 일부를 징수하여 高価導人精油社에 補填함에 따라 一般油類 消費者의 부담과는 무관하게 운용되기도 하며, 원유가 하락시에는 長期的인 油価安定을 위하여 同財源의 일부를 유보, 基金으로 조성하여 向後 油価上昇要因 發生時に 완충기능을 수행토록 함에 따라 소비자가 未來의 油価引下財源을 基金에 예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石油事業基金의特性에 따라 石油事業基金은 예산 외의 민간기금형태로 운용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기금 형태로서의 운용은 수시로 변화되는 국내외 석유정세를 고려, 징수 및 용도의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石油事業基金制度의 運用現況

1) 石油事業基金의 造成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은, 石油

輸入 또는 石油製品販売時에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과 國際原油価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國內石油精製業者가 최득한 差等利潤 등에서 징수하는 收入金, 기타 基金運用에 따른 수익금과 石油事業法에 의한 각종 별과금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石油輸入時에 石油輸入業者로부터 징수하는 收入金이 造成財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石油輸入時의 基金징수규모는, 법정징수한도범위내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동력자원부가 협의하여 결정 고시하되, 基金用途에 따라 비축기금, 안정기금, 개발기금으로 구분, 아래와 같이 定額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기금의 징수고시액 : 84. 4 현재〉

| * 달러화기준 고시액에 납부일의 전신환매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 | | | |
|-------------------------------------|--------------------------------------|--------------------------------------|---|
| 종 류 | 법정징수한도 | 현징수액 | 비 고 |
| ● 비축기금 | 1.4\$/B | 0.7\$/B (LPG200\$/톤) (LPG 87\$/톤) | 도입선 다변화 지원소 요동 : 0.15\$/B 에너지개발사업소요 : 0.55\$/B (83. 4. 19부 터 조성 : 당초 1.94\$/B) |
| ● 안정기금 | 3.5\$/B (LPG100\$/톤) (LPG100\$/톤) | 0.7\$/B (LPG100\$/톤) | |
| ● 개발기금 | 0.1\$/B 정액 (LPG 1\$/톤) | 0.1\$/B (LPG 1\$/톤) | |
| 計 | 5\$/B (LPG300\$/톤) | 1.5\$/B (LPG188\$/톤) | |

〈참고 1〉 1979. 7. 10 01후 石油事業基金徵收 變動狀況

(單位 : \$/B)

| 時 期 | 安定基金 | 備蓄基金 | 時 期 | 安定基金 | 備蓄基金 | 開發基金 |
|-----------|------------------------|--------------|-----------|----------------|------|------|
| 79. 7. 10 | (설도입가 -유가반 영원유가) | FOBX 3.3% | 82. 3. 11 | 0.7 | 1.5 | - |
| 80. 8. 24 | (〃)+1.0 | 1.0 | 83. 2. 6 | 0.15 | 1.1 | - |
| 11. 29 | (〃)+1.5 | 1.0 | 4. 19 | 2.09 (1.94) | 1.1 | - |
| 81. 4. 19 | 3.5 | 1.0 | 6. 15 | 2.09 (1.94) | 1.0 | 0.1 |
| 11. 29 | 2.3 | 1.5 | 10. 1 | 2.09 (1.94) | 0.7 | 0.1 |
| | | | 12. 1 | 0.7 (0.55) | 0.7 | 0.1 |

註 : ()는 安定基金中 83原油価 下落分에 对한 徵收額임.

2) 石油事業基金의 用途

石油事業基金의 용도는 「石油의 안정·低価供給」을 위하여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비축 및 저장시설, 석유개발사업,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제업체에게 발생한 손실보전,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기타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는 비축기금, 안정기금, 개발기금으로 구분,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石油事業基金의 용도>

| 비축기금 | 안정기금 | 개발기금 |
|---------------------------|--|---------------------------|
| ○석유의 비축, 저 장에 필요한 설 비의 시설 |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 | ○석유의 탐사 및 시추소요자금용자 및 채무보증 |
| ○비축용 석유의 구입 | ○품질관리소요자금 지원 ○에너지개발사업 소요자금용자 (에너지이용 리화사업, 석탄 산업, 전원개발 사업) | |

그간 사용된 석유사업기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비축기금의 경우, 86년까지 국내석유사용량의 60일 분에 해당하는 정부비축을 목표로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상당액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85년 이후 대규모기지 완공에 따른 비축유의 일시 다량 구입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기금수지계획하에 동소요자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기금의 경우, 대부분은 제2차석유파동 기간 중 油價안정을 위하여 저가원유도입 정유사로부터 유류소비자의 부담과는 무관하게 징수하여 고가원유도입 정유사의 손실보전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원유의 안정화보를 위하여 中東지역으로 편중된 원유도입선을 미주나 아프리카 등 수송소요시간이 긴 지역으로 다변화하였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운송비 등 불이익에 대한 지원, 소비자보호를 위

한 품질관리사업에 사용되었다.

한편, 83. 3 국세원유가 하락시 장기적인 국내유가안정을 위하여 유가인하재원중 일부를 유보, 조성된 완충재원이 83년말 현재 1,628억원 수준으로 동재원은 당분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 에너지관련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자에 사용되고 있다.

개발기금의 경우, 석유탐사 및 시추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83. 6 기금을 신설·조성하기 시작하여 84년부터 동사업용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참고 2) 基金 수지현황 (79~83)

(단위 : 억원)

| 구 분 | 조성액 | 사용액 ¹ | 잔 고 |
|--|-------|---|-------|
| ○비축기금(정부비축) - 시설비 - 비축유구입비 - 관리유지비등 | 6,971 | 4,678 (1,540) (3,105) (33) | 2,293 |
| ○안정기금(기존) - 기준가차액 등 ² - 도입선다변화지원 - 품질검사소 설립비용 | 8,679 | 8,729 (8,494) (238) (7) | △50 |
| ○안정기금(완충재원, 에너지관련 사업용자) - 에너지이용합리화 - 하계저탄자금 - 전원개발사업 - 수자원개발사업 | 1,628 | 1,910 (238) (252) (1,000) (420) | △ 282 |
| ○개발기금(83. 6. 15이후조성) | 84 | - | 84 |

註 : 1) 사용액은 83년말 용도발생 기준

2) 기준가차액 등(고가차액보전 및 저가원유도입 장려)

○원유가 수시, 소급인상을 완충하고 원유가 다원화에 따른 사별원유가격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82. 3. 11에 원유가가 단일화되어 폐지(80. 1~82. 3. 10)

○고가차액을 보전하고 저가차액을 징수되어 저가원유를 도입 기여한데 대한 장려금 지급(80~81)

— 고가차액 : 실도입가 - 油價반영원유가
— 저가차액 : 油價반영원유가 - 실도입가

3) 石油事業基金의 管理

기금의 징수 및 관리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동력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임무수행 내용에 대하여 감독과 명령을 하고 있다.

기금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하여 기금의 수입, 지출, 사용계획 등 제반사항에 관한 운영계획과 결산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수익성, 안정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치 및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등 다양화하여 기금의 공익성과 중소기업보호의 산업정책적 추진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장기여유자금은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4) 石油事業基金의 감면, 환급, 유예제도

(1) 면제대상

기금의 감면제도는 基金의 공동부담 원칙과 국내 생산과 수입품의 기금부담형평을 감안, 면제대상을 가능한 한 축소토록 운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취약산업의 원료로 국내수급상 수입이 필요한 나프타, 윤활유, 윤활기유 등은 산업정책측면에서 기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여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항공휘발유 등 특수석유제품은 기금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환급대상

기금의 환급제도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취약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즉, 수출용 石油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요 석유분(일반수출, 국제병킹수출, 미군납수출)과 나프타수급원활을 위한 나프타생산용원유 및 윤활기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윤활기유 생산용 석유에 대하여는 공급실적을 기준하여 기금상당액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

(3) 징수유예대상

기금의 징수유예제도는 석유비축의 증대와 임가공수출을 통한 정유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민간비축을 위하여 수입

되는 석유에 대하여는 사용 또는 판매시까지 기금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임가공수출을 위하여 국내반입되는 석유는 임가공수출 완료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 90일간 징수를 유예토록 하고 있다.

II. 石油事業基金制度의 变천경위

石油事業基金制度는 국내외 石油情勢에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補完·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석유사업기금제도의 그간 변천경위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석유정세변화에 대처하여 基金制度가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의 石油事業基金制度는 석유정세에 따라 石油波動期(79~81), 전환기(82~83. 2), 석유수급안정기(83. 3~현재)의 3期로 大別할 수 있다.

1. 석유파동기(79~81)의 기금제도

1) 原油価 平準化制度에 의한 安定基金운용

安定基金制度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9年 7月 10日 油価調整時부터였다. 78年末 이란事態로부터 시작된 第2次 石油波動은 原油価의大幅引上外에도 프리미엄 賦課等에 따른 原油価多元化現象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原油価多元化現象下에서 創一的인 国内油価管理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政府는 79年 7月 10日 油価調整時 원유가평준화제도에 의한 安定基金制度를 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原油価가多元化되었음에도 創一的으로 国内油価를 調整한다면 값이 싼 原油를 도입하는 會社는 막대한 暴利를 보게 되는 반면, 비싼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社는 상당한 缺損의 발생으로 지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유가 평준화제도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완·변화되었으며, 81. 10. OPEC 총회가 제2차 석유파동과 함께 다원화되었던 원유가격을 단일화하기까지 지속되었다.

(1) 低価差額徵收 및 高価差額補填

79. 7. 산유국의 원유가 다원화정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基準価格 以下로 原油를 도입하는 경우 그 差額을 基金으로 徵收하고 基準価格以上으로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安定基金으로 補填토록 하였다. 또한 安定基金을 徵收하는 경우에도 各精油社의 損益을勘案하여 徵收토록 함으로써 安定基金이 精油社의 損益調整機能을 갖도록 하였다.

(2) 定額基金의 並行徵收

그러나 80年 2月 变동환율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내유가는 원유가 상승과 함께 환율상승의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80. 8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보전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별도 정액의 안정기금을(80. 8. 24 1 \$/B, 80. 11. 19 1.5 \$/B) 추가징수토록 하여 원유가평준화제도를 보완하였다.

(3) 低価原油導入의 촉진

81. 4 低価原油의 導入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유가평준화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油價에 반영하는 原油의 基準価格를 平均導入価에서 가장 低価로 原油를 導入하는 精油社의 原油価로 하여 低価差額徵收制를 폐지토록 하고 정액기금만을 징수토록 하여 低価差額徵收와 高価差額補填에 따른 低価原油導入社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소나마 競爭原理를 도입코자 하였다.

또한 제2차 석유파동末期인 81. 11에는 싼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비싼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토록 하여 경쟁촉진방향으로 원유가 평준화제도를 보완하였다.

2) 정부비축사업의 시작과 비축기금의 운용

제2차 석유파동의 특징은 가격의 급등과 함께 물량부족사태였다. 79년 당시 국내원유 재고는 약 1주일분, 석유비축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정부비축사업을 진급히 추진, 석유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경세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86년 국내소요석유분의 60일분 비축을 목표로 정부비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재원 확보를 위하여 비축기금제도를 운용케 되었다. 79

년 당초 기금징수규모는 1 \$/B수준이었으나 그후 비축석유구입비의 급상승과 시설기자재의 상승으로 81. 11에는 1.5 \$/B로 징수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다.

2. 전환기(82~83. 2)의 기금제도

1) 원유가 평준화제도의 폐지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81年 10月 29日 開催되었던 OPEC總會가 第2次 石油波動이후 多元化되어있던 原油価格을 단 일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82年 3月 11日 内油価를 2.82% 인하조정하면서 原油価平準화制度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安定基金에 의한 高価差額補填制度도 사실상 폐지되었고, 安定基金徵收額도 未補填分所要 및 原油導入先 多邊化支援所要만 除外하고 대폭 인하되었다(2.30→0.70 \$/B).

이러한 원유가평준화제도 폐지는 국제석유시장의 수급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정유사 自体노력에 의한 저가원유선택이 가능시되어, 원유부문에서의 정유사간 경쟁원리를 본격 도입, 국내유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한 것이다.

또한 정정이 불안정한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의존도를 축소, 원유공급선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추가운송비와 추가금융비용에 대한 손실보전과 장려금지급에 의한 유인시책을 마련하였다.

2)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기금 부과

82. 8 수입원유에만 부과돼오던 기금을 수입석유제품에도 부과토록 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의 기금부과 형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수급상 불필요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요인을 제거하여 소비자경제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현재 석유제품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LPG와 B-C油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을 고려, 기금징수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83年 2月 6日 内油価調整時는 輸入 LPG에 대한 기금징수제원 확보에 따라 국내유가를 1.68% 인하하는 한편 安定基金徵收額을 0.15 \$/B까지 낮췄다.

3. 석유수급안정기(83. 3~현재)의 기금제도

1) 原油価 하락에 따른 油價完충재원확보와 에너지관련사업 지원

83年 3月 14日 英領 런던에서 開催되었던 第67次 OPEC總會는 수차례의 協議끝에 原油의 基準價格을 34 \$/B에서 29 \$/B로 5 \$/B 인하키로 決定하였으며, 產油量도 1,850萬B/D에서 1,750萬B/D로 100萬B/D를 縮少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석유대체추진등에 따른 석유수요감퇴와 북해유전개발 등 非OPEC제국의 산유량 증대에 따라 세계 석유수급은 공급과잉의 새로운 국면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PEC의 原油価引下決定에 따른 国内導入 原油価下落分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下落分의 70%를 関稅와 安定基金으로 吸收하고 30%를 国内油価引下에 사용키로 결정, 83. 4. 19자로 国内油価를 4.76% 인하하는 한편, 安定基金은 既存 0.15 \$/B에 추가로 1.94 \$/B을 합쳐 2.09 \$/B을 징수키로 하였다.

추가로 조성된 안정기금(일명: 에너지사업 관련기금)은 국제원유가 재 반등, 국내환율상승 등 원유도입비용이 상승할 경우 안정기금 징수규모의 축소, 조성기금의 활용 등으로 하여 국내유가 인상요인의 완충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완충재원으로 확보된 기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전원개발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석탄산업 등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응자·지원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금의 유가완충기능은, 83. 12 환율이 연초대비 6.3% 상승함에 따른 유가인상요인 4%를 안정기금의 징수규모를 하향조정 ($1.94 \rightarrow 0.55 \$/B$) 토록 해소한 바 있다.

2) 개발기금의 신설

83. 6 장기적인 석유수급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국내외 석유탐사 및 시추사업의 적극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게 됨에 따라 개발기금을 신설, 0.1 \$/B 해당액을 징수 사용토록 하였다. 이는 비축기금, 안정기금과 함께 석유사업 기금제도 기능이 석유비축 및 원유도입선 다변화의 시급

한 수급안정시책에서 유전개발과 에너지소비절약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수급안정 기반구축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운용이 가능케 되었다.

3) 비축사업의 조정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탈석유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국내 석유소비량은 79년 비축사업개시 당초 예상된 양에 비하여 상당수준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83. 10 기준 정부비축계획을 86년 60일 소요 예상분 기준으로 축소 전면 조정하는 한편, 비축기금의 징수규모도 0.7 \$/B 수준으로 축소토록 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LPG수요를 감안, 가스화시대에 대비한 LPG비축도 추가토록 하였다.

한편 84. 4에는 민간비축수준 제고를 위한 기금 징수유예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4) 기금의 징수, 감면, 환급, 유예제도의 정립

(1) 통관일 기준 기금납부제도

84. 4 석유수입업자의 기금납부일을 선적후 30일 이내에서 통관일 이내로 조정하였다. 그간 석유사업기금의 납부기일은 주된 원유도입지역인 중동으로부터의 수송기간을 감안, 선적후 30일 이내로 하여 왔으나, 징수시점의 획일화에 따른 수익미실현분에 대한 과세모순, 특히 장거리수송이 불가피한 도입선 다변화 원유의 수익성 저하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세, 방위세 등 타수입부담금과의 징수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유사업기금 징수 편의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이 선하증권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할 때 징구하면 약속어음 징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관시 세관장이 거래외국환은행장이 교부한 석유사업기금 납부필증을 확인토록 하였다.

(2) 감면, 환급 및 유예제도

82. 8 수입석유제품에 대하여 기금을 부과함에 따라 수입석유제품중 석유화학공업원료인 나프타와 기존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윤활유, 윤활기유, 한전의 서울화력용 LSWR에 대한 별도정책

적 고려가 필요하게 되어 동 수입제품에 대한 기금 징수는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전량수입의존이 불가피한 항공휘발유 등과 나프타 대체재인 석유화학 공업원료용 가스오일도 기금 면제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84년초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 급증과 함께 나프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과다한 국내 나프타가 저가유지에 의해 국내생산공급량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나프타의 가격 및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국내 나프타가의 수입가 연동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일시 가격정상화는 석유화학업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가격정상화는 석유화학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가격정상화까지의 수급보완대책으로 84. 4 국내생산판매되는 나프타에 대하여는 소요원유에 대한 기금을 환급토록 하여 정유사의 자발적인 나프타 증산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유사의 수익증가분은 83. 3. 8 유가조정시 0.64%의 인하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윤활기유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는 원료인 국내 병커씨유 가격의 국제수준 인하와 가동률 제고가 급선무이나 국내 병커씨유 가격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84. 4 윤활기유산업의 건전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윤활기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 시한부로 기금환급제도를 운용토록 하였다.

82. 6 정유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수익향상을 위한 임가공수출이 추진됨에 따라 동수출품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수입시 부과한 기금은 환급토록 하는 한편, 임가공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미수출품에 대한 기금징수를 유예토록 하였다.

또한 83. 8에는 일반수출석유제품(국제 병커링 수출, 미군납수출)에 대하여도 기금을 환급토록 하여, 수출시 정유사의 과다결손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타수입부담금과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다.

5) 품질관리사업의 추진

83. 11 석유제품의 연구개발, 시험조사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검사소의 소요자금을 석유안정기금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III. 석유정세 전망에 따른 장기과제

1. 석유정세 전망과 대응전략

앞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석유사업 기금제도는 석유정책의 포괄적 수단으로 석유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변모되어 왔다. 따라서 석유사업 기금제도의 장기과제는 앞으로 펼쳐질 국내외 석유정세 모습과 이에 대한 가능한 대응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종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국내외 석유정세와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석유수급 안정 측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석유의 적정비축, 유전개발의 적극추진과 함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의 석유소비절약과 비상시 석유수급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즉, 종장기적으로 국내소요에너지 중 석유비중은 저하되나, 석유의 절대소비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계석유수급은 근본적인 물량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우리의 비축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며 중동의존도도 과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수급안정기반의 공고화를 위하여는 석유소비절약시책의 적극화와 함께 유전개발의 착

〈참고 3〉 장기 석유수급 전망

| | 83 | 86 | 91 | 2001 |
|---------------------------------|------|------|------|--------|
| ● 석유비중 (%) | 56.5 | 50.9 | 46.4 | 38.1 |
| ● 소비량 (천B/D) | 522 | 608 | 725 | 979 |
| ● 산유국잠재생산력 ¹ (백만B/D) | 15 | (+) | 0—△4 | △9—△21 |

註：1) 에너지장기전망과 대책(동력자원연구소)

□ 特輯 I / 関稅 · 基金制度의 再点検 □

실한 추진(2001년까지 자급률 10% 수준 달성목표), 민간비축유인 등 적정석유비축 확보(86년까지 110일분 비축달성 목표: 정부 60일, 민간 50일),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 추진(중동의존도 감축목표: 84년 68%, 86년 60% 이하)이 절실하다.

2) 석유수출입 합리화 측면

한편 석유수출입정책에 있어서 국제석유정세 변화를 적극 활용토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석유시장은 현재 공급과잉상황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공시가격에 비하여 저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과 개방체제 구현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추진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입량 증대와 소비지정제주의의 퇴색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석유정세와 수급안정수준을 감안한 현물시장 원유의 적정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과의 균형을 통한 공급의 최적화를 도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유시설의 보완측면

국내 정유시설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석유소비절약으로 가동률이 상당수 준 저하된 상태이며, 시설의 고령으로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질유, 중질유사용비율의 변화로 유종간 수급차질발생이 예상된다.

(참고 4) 유종간 구성비 변화전망

| | 83 | 86 | 91 | 2001 |
|--------|----|----|----|------|
| 경질유(%) | 51 | 60 | 68 | 71 |
| 중질유(%) | 49 | 40 | 32 | 29 |

따라서, 정유시설의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는 임가공수출, 국제벙커링수출확대 등 해외부문에서의 수요창출과 함께 일부 노후시설을 타용도로 개체, 사용토록 하는 등 정유시설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5) 정유시설 개체사용예

○ 상압증류탑

→Visbreaking 시설로 개체

○ 휘발유 제조시설(가동률 30~50%)

→BTX 제조시설(석유화학)로 개체

또한 장기적인 유종간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질유 분해시설 설치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 6) 중질유 분해시설 건설 추진현황

| | 極東 | 油公 | 湖油 |
|---------|----------------|----------------|-------------|
| ● 시설 능력 | 34천B/D | 30천B/D | 34천B/D |
| ● 건설 기간 | 82~85 | 85~87 | 84 |
| ● 공정 | Hydro-cracking | Hydro-cracking | Visbreaking |
| ● 소요자금 | 2,670억원 | 1,789억원 | 170억원 |

4) 油価관리제도 합리화 측면

국내 유가관리는 정유시설의 국내설치 초기부터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정유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촉진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유가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등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가관리방식의 전환은 국내의 여건을 감안, 장기·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유종간 가격구조 왜곡현상과 조세공과금의 과중한 부담도 장기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석유사업기금제도의 장기과제

위와 같은 석유정세 전망과 대응전략은 석유사업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몇 가지 장기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석유수급 안정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과제이다. 물론 현재도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과 이용합리화에 대한 안정기금의 용자, 유전개발을 위한 개발기금의 용자, 정부비축에 대한 비축금의 사용,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안정기금의 손실보전 등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83년 원유가 하락에 따른 원총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에너지소비절약, 전원개발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석탄산업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이를 에너지소비절약에 집중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기금의 조성규모 0.1 \$/B(연간 160억원)은 유전개발의 진출상황을

고려, 그 규모를 확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유전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석유세에서 연간 4,500억원 수준을 지원하여 우리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축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비축에 대한 효율적인 유인이 가능토록 기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유인시책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석유수출입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 석유제품에 대한 기금징수비율은 국내 고시가격과 수입가격을 고려, 유종에 따라 상당수준 격차를 두고 있다.

특히 LPG의 경우에는 188 \$ / 톤(16 \$ / B 해당)을 징수하여 일반석유제품 1.5 \$ / B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변모하는 국제석유정세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생산과 수입과의 균형을 통한 공급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수출입 규제내용의 완화와 함께 전제품에 대한 기금 균등부과와 기금 면세대상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의 균등부과 실시는 국내 유종간가격 구조의 국제수준 접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가관리제도의 개선 추진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정유시설 보완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유

가관리에 따른 과제이다. 그간 석유사업기금, 특히 안정기금은 손실보전 제도가 추축을 이루어 정유사간 경쟁추진을 일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유산업 시설의 보완 등 일련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에 비추어 석유사업 기금제도의 운용도 경쟁촉진을 위한 손실보전제도 축소와 함께 정유산업의 건전육성과 석유정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事前 지원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네째, 석유관련 조세공과금 부담의 경감과제이다. 국내 유류가격 중 조세공과금의 부담은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격의 22.5%의 높은 비중이며, 이는 일본, 대만 등 타경쟁국의 10~13%에 비하여 과중한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이러한 석유사업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은 정유산업 체질강화와 유가관리제도 개선, 수급안정기반 공고화에 기여하여 장기적인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석유 저가·안정 공급」의 정책목표 실현의 근간이 될 것이다. *

